

1. 개정이유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인사평정 절차 및 점수 산정방식, 다면평가 등 규정에 재외동포청의 역할 및 기능을 추가하고 외무공무원임용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사분야 업무내용을 구체화(안 제9조)

나.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재외동포청 직위를 명시(안 제14조)

다. 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인사평정 절차 및 인사평정점 산정 규정에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안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2조)

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권한 추가(안 제20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6. 21. ~ 7.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재외동포 보호”를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지원”으로 한다.

제14조제6호 중 “영 제3조제2항제5호”를 “영 제3조제2항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직위 중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제16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의2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5명”을 “5명 이상”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
월 일 작성자 외교부장관”을 “:
월 일 작성자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업무분야의 구분) ① 영 제 21조제1항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무분야·경제통상분야·영사분야 및 관리분야(이하 “업무분야”라 한다)로 구분하되, 각 업무분야별 업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영사분야 : 영사, <u>재외동포 보호</u> 4. (생략) ② (생략)	제9조(업무분야의 구분)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재외국민 보호</u> <u>호, 재외동포 지원</u>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영 제24조제2호에 따라 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각각 해당 직위에 보직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삭제 2. ~ 5. (생략) 6. <u>영 제3조제2항제5호</u>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제5호의 직위	제14조(직위공모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 ----- ----- ----- ----- ---. ----- ----- ----- -----. 2. ~ 5. (현행과 같음) 6. <u>영 제3조제2항제2호다목</u> --- -----

중 인사교류를 실시하는 직위
<신 설>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
을 기준으로 법 제17조의 규정
에 의한 인사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7조(근무실적 평정) ①·②
(생 략)

③ 근무실적 평정의 평가등급
수, 분포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장관은 참서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참서관급 이상
직위에 재직하였다가 보직 없이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에 대하여
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
한 직상위자와의 성과계약에 따
른 목표달성도 평가(이하 “성과
계약평가”라 한다)로 근무실적
을 평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7.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직위 중 외무공무원으로 보하
는 직위

제16조(인사평정의 시기 및 방법)

①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근무실적 평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
장-----.

④ ----- 외교부
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

기, 대상 및 방법 등 성과계약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해 상위자·동위자 및 하위자를 포함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업무유관자군에서 5명의 평정자를 선정하여 소속 공무원을 평가할 수 있다.

제21조(인사평정점의 산정) ①인사평정대상공무원의 인사평정점은 근무실적의 평정점,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의 평정점 및 부서 평정점 등을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평가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조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평정대상 기간 중의 업무 공과(功過),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평정대상공무원에게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2조(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

-----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

제20조의2(다면평가)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 5명 이상-----

-----.

제21조(인사평정점의 산정) ①-----

-----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

-----.

② 외교부장관 및 재외동포청장-----

-----.

제22조(인사평정점의 조정 및 인

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생략) ②인사평정조정위원회는 인사 평정대상공무원의 직렬과 직무 등급별로 인사평정점이 높은 자 의 순서대로 <u>외교부장관</u>이 정하 는 비율에 따라 1등급 내지 4등 급으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사평정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외교부장관 및 재외</u> <u>동포청장</u>----- -----. ③·④ (현행과 같음)
---	--